

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602
---------	------

2017년 2월 20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2월 6일, 서울특별시청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2월 7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7년 2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)

가. 제안이유

- 「교통안전법」 개정에 의해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방교통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 및 개정되었음
-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「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의 내용을 대신할 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’가 구성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「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 : 규제사무 없음
- (2) 민관협력담당관(위원회) : 해당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 : 해당없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 : 평가제외
- (5) 여성가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 : 해당없음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갈등영향분석평가) : 의견없음

라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6. 12. 2 ~ 12. 21
- 제출의견 : 제출의견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폐지조례안은 「교통안전법」 개정으로 ‘교통안전대책위원회’가 ‘지방교통위원회’로 변경되는 한편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’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중복과 교통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「교통안전법」에 따른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「교통안전법」이 개정된 바 있으며, 서울시는 이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·시행하고¹⁾ 있음

※ 참고 : 「교통안전법」 일부개정 내용(2012.3.1 일부개정/2012.9.1 시행)

기 존	개 정
제13조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하에 <u>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시·도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<u>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 <u>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</u> 」 제110조에 따른 <u>지방교통위원회</u> (이하 “지방교통위원회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<u>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- 따라서 동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의 일부개정 내용이 시행된 시점인 2012년 9월 1일에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했으나 검토되지 않았으며,

1) 2012.1.5 제정 / 2012.1.5 시행

이후 2014년 7월에서야 서울시 법무담당관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면서 동 조례의 폐지를 권고하는 법제처의 내용을 포함한 정비안에 대해 소관 부서 의견을 요청했고²⁾, 관련 부서에서 조례 폐지를 수용하는 의견을 제출했으나³⁾ 일괄정비 대상 목록에서 누락되는 등 그 동안 동 조례를 폐지하지 못했음

- 동 폐지조례안은 「교통안전법」 일부개정에 따라 ‘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’의 역할과 기능이 ‘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’로 통합된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난 5년여 간 사문화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2) 자치법규 정비안(1차)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/ 법무담당관-14856(2014.7.4.)

3) 자치법규 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출 / 교통정책과-14724(2014.7.22.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